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705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6년 5월 2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6년 5월 27일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 및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추천위원회 구성 명확화 및 법적안정성 등 강화를 위해 해당 조례 추천위원회 제1항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인원 아래와 같이 개정(안 제9조제1항)
 - 시장 추천 3명, 시의회 추천 3명 → 시장 추천 2명, 시의회 추천 3명, 이사회 추천 2명
- 나. 띄어쓰기 및 자구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 및 「서울특별시
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 의견 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6. 4. 2. ~ 4. 22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윤희)

- 동 개정안은 세종문화회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일반적인 서울시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밖에 일부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체계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,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하였음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문화 예술진흥</u> 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문화예술 진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법인의 사업) 법인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(생략) 2. 삭제 3. <u>공연예술진흥</u>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4. ~ 6. (생략) 7. <u>문화예술진흥</u> 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	제4조(법인의 사업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3. <u>공연예술 진흥</u> --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문화예술 진흥</u> ----- -----
제6조(정관) ① (생략)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<u>서울특별시의회</u>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6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</u> (이하 " <u>시의회</u> "라 한다) -----.
제6조의2(대관심의회 및 대관 특례) ① (생략) ② 대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<u>시장</u> 이 정한다. ③·④ (생략)	제6조의2(대관심의회 및 대관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상임이사</u> (이하 " <u>사장</u> "이라 한다)가 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7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(이하 “사장”이라 한다)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. ②·③ (생략)	제7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----- --- <u>사장</u>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추천위원회)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시장이 추천하는 3명 2.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가 추천하는 3명 <u><신설></u>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, 경영전문인,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, 법인의 임직원, <u>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</u> 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 ③·④ (생략) ⑤ 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<u>임명하고자</u>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⑥ (생략)	제9조(추천위원회) ① ----- -----. 1. ----- <u>사람 2명</u> 2. <u>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</u> 3. <u>법인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</u> ②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-----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<u>임명하고자</u> ----- -----. ⑥ (현행과 같음)
제17조(경영평가) ①·② (생략) ③ 시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<u>법인에 대하여</u>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인사상·예산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④ (생략)	제17조(경영평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법인에게</u>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
-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¹⁾ 및 제8조제1항²⁾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종문화회관(이하 “재단”)의 임원을 임명하거나 연임하도록 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심의를 거쳐야 함.

1) 제7조(임원의 임면 등) ②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. 단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.
2) 제8조(임원의 임기 및 직무) ① 법인의 이사장·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다만,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▶시장이 추천하는 3명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3명(총 6명)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, 이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출자·출연 조례”) 제8조제1항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음.
- 출자·출연 조례 제8조제1항은 기관 설립 시를 제외하면 ▶시장이 추천하는 2명, 시의회가 추천하는 3명,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(총 7명)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안 제9조제1항은 이와 동일한 구성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.

< 위원회 구성 비교 >

추천자	현행	개정안	출자·출연 조례 (2022. 10. 17. 시행 이후)
합계	6명	7명	7명
시장	3명	2명	2명
시의회	3명	3명	3명
이사회	-	2명	2명

- 이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 제27조³⁾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침⁴⁾은 위원회 설치·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형성권은 폭넓게 인정됨.

3) 제27조(운영지침의 통보)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·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,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

1. 조직 운영과 정원·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

4)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」(2026. 1. 1.)

<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」(행정안전부, 2026.1.1.) >

Ⅱ. 임원의 인사

③ 임원추천위원회 설치·운영

- 출자·출연 기관은 임원 임용의 공정성, 전문성,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- 위원회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「지방공기업 인사·조직 운영기준」을 준용할 수 있음
- ※ 위원회 위원 추천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음

- 다만 재단이 타 서울시 산하 출자·출연 기관과는 차별화된 위원회 구성 기준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제상 명확성 및 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 조례의 성격을 지닌 출자·출연 조례와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- 현재 동 조례와 출자·출연 조례 모두 ‘다른 조례와의 관계’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혼동⁵⁾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.
- 더불어, 「지방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」은 출자·출연 기관이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「지방공기업 인사·조직 운영기준」⁶⁾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해당 기준은 지방공기업의 위원회를 개정안과 동일한 ►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명, 의회가 추천하는 3명, 공사(공단) 이사회가 추천하는 2명(총 7명)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⁷⁾ 동 개정안이 재량권을 일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.

5)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기본 조례의 성격에 가까운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보다 특별 조례의 성격에 가까운 동 조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.(특별법 우선의 원칙)

6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3조의5(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)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7)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6조의3제1항과 동일(7쪽 추가 설명란 참고)

< 「지방공기업 인사·조직 운영기준」(행정안전부, 2026.5.1.) 및 근거 법령 >

□ 「지방공기업 인사·조직 운영기준」

Ⅱ. 임원의 인사

③ 임원추천위원회 설치·구성

다. 구성인원

-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함(시행령 제56조의3제1항)
 - 다만, 지방공사·공단 설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며,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둠
- 1.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
- 2.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
- 3. 그 지방공사(공단)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

□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※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위임 규정

제56조의3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.

- 1.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
- 2.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- 3.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
- 안 제9조제1항을 제외한 개정안의 내용은 기술적인 문법 및 표현상의 개선 사항으로,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여 시민 이해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음.

전문위원

임창균(2180-8113)

입법조사관

홍민지(2180-8118)